
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선지급서비스특약

2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가입나이,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

가. 가입나이

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된 보험계약(이하 “주계약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나. 보험기간

이 특약을 부가한 날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(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)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한다.

다.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

이 특약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
3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이 없음

4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이 특약은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.

5. 부가대상 보험계약

이 특약은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와 **피보험자(보험대상자)**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
6. 사망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

가. 선지급조건

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**피보험자(보험대상자)**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로 한다.

나. 선지급 사망보험금액의 한도

주계약 사망보험금액(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)의 50%이내에서 **피보험자(보험대상자)**별로 통산하여 최고 1억원까지로 한다. 다만, 1000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%이내로 할 수 있다.

다. 선지급방법

선지급 사망보험금액에서 다음에 정한 (1) ~ (3)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지급한다.

- (1)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
- (2)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명기간의 보험료
- (3)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

라. 선지급후의 처리

선지급 한 사망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일에 감액처리하며, 감액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
마.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 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“가”~“라”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7. 기타사항

기타사항은 주계약 사업방법서를 따른다.